

# 과목명: 보험론



담당교수: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  
주교재: 보험과 리스크 관리

## 제5장 보험계약의 구조

### 목 차

- 1절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 2절 보험계약의 기본요소
- 3절 보험계약 당사자와 보험계약의 관계자
- 4절 보험자의 이행보조자

## 학습목표

1. 보험증권의 성격 이해
2.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이해
3. 보험사고의 보험방식의 유형 및 차이점 이해
4. 면책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
5.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타보험조항 등과 같은 약관조항에 대해 이해한다.
6. 자기부담금과 공동보험의 내용과 사용근거에 대해 이해한다.
7.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충족시켜야하는 여러 조건에 대해 이해한다.

## 제1절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 1. 보험증권

#### 1) 의의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증권)
- 보험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하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은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계약성립과는 무관)
- 보험증권의 발행에 의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비설권증권)-보험계약 성립 시 권리와 의무 발생
-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정의무)

## 2) 법적 성격

### ① 요식증권성

- 일정한 사항을 기재
- 기재 기본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별도의 기재사항을 규정
-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명을 별도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음

### ② 증거증권성

-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증권-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그 기재가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추정력을 가짐(자체가 계약서는 아님)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내용이 됨-비문언증권

### ③ 면책증권성

-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증권의 제시자의 자격을 조사하여야 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면책증권. 즉 준점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됨.

### ④ 상환증권성(=제시증권성)

- 실무적으로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상환증권의 성격을 띠지만, 보험증권이 아니더라도 보험청구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피보험자임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증권 분실 시 피보험자는 법원을 통해 제권 절차를 밟아야 함)

### ⑤ 유가증권성

- 재산권을 표장하는 증권으로서 권리가 증서에 체화되어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 인보험, 손해보험 중 지명증권은 유가증권성 부정
  - 지시증권이나 무기명 증권은 일부 유가증권성의 성질을 일부 가짐(통설): 운송보험, 적하보험-배서 가능

## 2. 보험약관

### 1) 의의

- 보통보험약관(=표준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함.(일반적인 계약조항)
- 특별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약하여 정한 약관(개별약관)으로 보통보험약관의 보상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함.-보통보험약관에 우선 적용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과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2) 존재이유

-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내용을 정형화하여야 한다는 기술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

### 3) 기재사항(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법제화-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보험회사 면책사유, 보험회사 의무한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무불이행시 받을 손실,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범위.

## 제2절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1. 보험의 목적(물)

- 보험사고발생의 객체
- 피보험자의 재물, 생명 또는 신체
  - 손해보험의 목적: 경제상의 구체적인 유체물(가옥, 자동차, 선박 등)과 무체물(특허권 등)
  - 인보험의 목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자연인만 해당)
    - 사망보험의 경우 15세미만인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니면 가능)

### 2.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계약당사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되지 못함.

#### 1) 보험자(insurer)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 위험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
- 한국은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있고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공제 등이 있음.

## 2) 보험계약자(contractor of insurance)

-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 자격제한이 없음.
-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체결하여도 되지만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가능-법정대리인)

## 3. 보험계약의 관계자

### 1) 피보험자(insured)

-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자
- 손해보험-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를 입어 보상을 받는 사람
- 인보험-그 사람의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해 보험증권이 발행 된 사람 (보험대상자)

#### ➤ 기명피보험자

## 1. 보험사고

- 의의: 보험자가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

보험금지급사유

- 손해보상방식:

열거위험담보-명시된 원인에 의한 손해 보상

포괄위험담보-우연한 손실에 대해 보상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1.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
- 실효계약
- 계약의 부활

### 2. 보험기간

- 사고 발생에 대한 시간적 제한
- 종신보험/정기보험/장기손해보험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1. 보험금

-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보험
- 중복보험
- 일부보험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자기부담금:**  
    **목적-소액 보상청구의 방지**  
        보험료의 절감  
        손실방지 독려  
    **형태-정액 자기부담금**  
        누적 자기부담금  
        프랜차이즈 자기부담금
- **공동보험조항:**  
    일부보험인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  
        규정-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목적-손실방지 효과**  
        요율의 형평성(equity in rating)  
    **문제점-보험가액과 함께 보험가입금액 상승**  
        보험가입금액이 요구보험액에 못 미친 경우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타보험조항:**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손실에 대한 중복보상을 방지

형태-비례분할부담조항

균일부담조항

초과부담조항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1. 면책

- 면책손인
  - 도덕적 위태 방지
  - 중복보험 방지
  - 별도의 요율산정 방지
  - 민영보험사의 영리 추구
- 면책재산
  - 특정 재산이 다른 보험에서 담보됨
  - 도덕적 위태의 발생 가능성
  -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제외
- 면책손실
  - 부보가능하지 않은 유형의 손실

# 1.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

## 1. 조건부분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게 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중요한 부분**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위험변경·증가의 금지의무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협력 의무
- 손해방지의무

## 1. 특약조항(endorsement or rider)

**기본계약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담보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한 조항**

## 1. 연습문제

1. 보험증권의 법적 특성을 설명하시오.
2.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은 어떻게 분류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3.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갑은 절친한 친구가 소유한 자동차를 빌려 타고 동창생들과 여행을 갖다가 사고가 났다. 이 경우 갑은 친구가 소유한 자동차를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5. 공동보험조항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
6. 일반적으로 조건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7. 표준약관과 특별약관의 필요성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자기부담금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9. 자동차보험에서 사용되는 타 보험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균일부담조항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많이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면책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면책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목표

1. 보험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종류 이해
2.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과 종료에 대한 이해
3. 보험계약과 일반계약의 특성에 대한 이해
4. 보험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원칙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
5.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특수한 법적 원칙과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
6. 법적 원칙과 보험약관 및 제도의 관계 이해

## 제1절 보험관련 법 및 규정

### 1. 상법(보험계약법)

#### ➤ 상법의 보험편

- 제 1장 총칙: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보험료지급 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사고 발생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제 2장 손해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 보험자 대위 등에 대해 규정
  - 제 3장 인보험: 인보험 계약의 의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금지 등이 규정,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부분(각론)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시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등에 대해서 규정
-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

## 1. 보험관련 법 및 규정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반 기업집단으로서의 보험사의 독과점에 규정, 소유 및 출자에 관한 제한 규정 등

### 3. 보험업법

- 1962년 제정
- 보험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설립조건, 약관규정, 보험업에 대한 국가감독의 규정
  - 보험업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

## 제2절 보험계약의 일반적 특성

### 1.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 1) 계약의 요건

- ① 청약과 승낙: 청약-보험계약자, 승낙-보험회사
  -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에 의해 청약의 유인을 받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으로 간주

ex)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했고 이에 대해 계약자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승낙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것

- ② 교환되는 가치의 존재
  - 보험료 ↔ 보험금 및 사고와 관련된 보상
- ③ 계약 당사자의 법적 행위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 ④ 계약의 합법성
  -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 미풍양속에 합당.

## 2) 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 ①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 ② 계약의 해제:

-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 법정해제 사유 필요

## 3) 계약의 취소와 무효

### ① 계약의 취소:

-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

### ② 계약의 무효:

-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 2.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 1) 불요식, 낙성 계약:

-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보험증권의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 2) 사행계약(↔등가계약):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가 불일치

### 3) 편무계약(↔쌍무계약):

-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보상이나 관련 서비스를 공여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약속을 한다.

### 4) 조건부계약:

- 우연한 보험 사고의 발생과 함께 보험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준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지켜야 할 필수적 의무를 준수할 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함

### 5) 부합계약:

-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체결, 기술성과 공동체성으로 인해 정형성이 요구

### 6) 인적계약:

- 정보비대칭성의 정도가 크므로 높은 수준의 선의가 요구됨

## 제3절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 1. 실손 보상의 원칙

#### ➤ 목적

- 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 도덕적 위태(Moral Hazard)를 감소시키는 것

#### ➤ 실제손실액의 결정기준

- 실제현금가치(보상액)=대체비용-감가상각비
- 공정시장가격: 공정시장가격이 실제현금가치보다 낮을 때 활용

#### ➤ 예외

- **기평가계약**: 손실의 현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미리 합의한 금액을 지급
- **대체비용보험**: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음(손실부분이 발생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는 경우)
- **생명보험**: 생명가치의 평가가 난해하므로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상

## 2. 피보험의 원칙

- 피보험의 원칙: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 피보험의 존재하면 이해관계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
- 목적
  - 도박의 방지 목적
  - 도덕적 위태의 감소 목적
  - 손실의 크기 측정 목적(보험금은 피보험의 기준으로 산정)
- 원천
  - 손해보험
    - 소유권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의 존재
    - 배상책임당사자: 수탁자-수탁 재산에 대해 피보험의 존재
    - 법적 채권자: 채권의 확보를 위해 피보험의 존재
    - 계약관계: 계약물에 피보험의 존재

- 생명보험:
  - 선진국의 경우 본인 및 친인척,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상호간에 피보험이익이 존재
  -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 의 동의만 있으면 생명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

### ➤ 존재시기

- 손해보험: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야 함.  
(미국-계약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면 인정)
- 생명보험: 한국은 피보험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피보험자 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 성립

## 3. 대위의 원칙

### ➤ 대위:

- 제3자의 과실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실을 입어 보험자가 그 손해 액만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자가 이 제3자에 대해 보상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 ➤ 목적

- 이중보상 방지
- 제 3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방지

## 4. 최대선의의 원칙

- 보험계약 시 계약의 당사자에게 다른 일반계약보다 훨씬 높은 정직성과 선의 혹은 신의성실을 요구
  -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고지 및 계약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금지의무 등이 부과
- 고지, 은폐, 보증(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 유지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해지 가능
    - 금항변조항: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자가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
  - 은폐: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고지의무 위반과 동일
  - 담보(보증):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하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진술이나 약속이 사실이어야 함
    - 육시 담보: 상호간에 육시적으로 약속
    - 명시 담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속

## 연습문제

1. 보험계약의 해지 및 무효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
2. 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3. 실손보상의 원칙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4. 피보험이익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피보험이익의 원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에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설명하시오.
6. 대위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7. 고지의무는 무엇이며, 위반할 경우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육시담보와 최대선의의 원칙과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고하셨습니다.